

학칙시행내규 개정안

현행	개정안
<p>제21조의 2(재이수 신청) ①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+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이수신청서를 수강신청(정정) 기간 내에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성적사정 후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만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 한다.</p>	<p>제21조의 2(재이수 신청) ①주 취득한 과목의 성적이 C+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재이수신청서를 수강신청(정정) 기간 내에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성적사정 후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만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 한다.</p> <p>③ 재이수 과목의 성적상한은 A⁰로 제한 한다.</p> <p>④ 재이수한 과목 신청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학기당 3과목, 졸업시까지 1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F과목은 제외한다</p>
	<p>부칙</p> <p>1.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☞ 개정사유: 기관평가인증에서 개정할 것을 요청한 권고사항